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정원도시국

## 총 1건 건의

##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국유재산(공원) 무상사용 근거 마련	정원도시 정책과

# 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국유재산(공원) 무상사용 근거 마련 (정원도시정책과, '25.8.22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현황 및 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('11.4.1.)으로 인해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에도 해당 재산 취득을 조건으로 최장 1년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국유재산 무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</li> <li>○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가-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개선 필요성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원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려는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</li> <li>○ 시민 이용이 많은 도심 속 공원에 사용료 부과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경우, 시민을 위한 공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</li> <li>○ 공원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기는 개방 여가 및 휴게공간으로서 사용료 면제 필요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국유재산법 시행령)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, 중앙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 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</li> <li>○ (공원녹지법) 공원관리청이 국유지를 도시 공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조항 신설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관련규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2조</li> <li>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현황 및 향후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건의('25.8.22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토과제로 선정되어 소관 중앙부처(기획재정부·국토교통부)에서 검토 중</li> </ul> </li> <li>○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법령 개정 적극 추진</li> </ul>	(기획재정부) (국토교통부)